

제281(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년 6월 19일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민경환 의원 외 7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9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 6.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추가함으로써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 안 제3조)
- 일부 미비한 조항의 정비 등(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2 ~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7조 ~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4조)
-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 등(안 제29조의2, 안 제32조)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의 변경(안 제33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환경을 무형인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도내로 유치되는 서비스업종이 도민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업”을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제2조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2조제12호 중 “이라함은”을 “이라 함은”으로, “기업”을 “기업과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낙후지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내 기업”을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국내기업투자”를 “국내·외 기업투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국인촉진법 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군의”를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투자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국내기업”을 각각 “국내·외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을 “투자유치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국내기업”을 “국내·외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장, 연구소를” “연구소, 공장을”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서비스업이 별표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7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제목 중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기업투자”를 “국내·외기업투자”로 한다.

제32조 제목 중 “지원한도”를 “지원한도 및 절차”로 하고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 중 “기타 지역경제에”를 “도내 낙후지역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업에 대한에”를 “기업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58(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및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2. “투자기업”이라 함은 도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생략)

14. (생략)

가. (생략)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5. ~ 17. (생략)

<신 설>

11.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2. ----- 이라 함은 -----
----- 기업과 서비스업 -----.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9조 -----

15. ~ 17. (현행과 같음)

18. “낙후지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생략)

1. ~ 2. (생략)
3.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① (생략)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관련 과장이 되며, 「외국인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생략)

제14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 국내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 -----

-----.

제5조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국내·외 기업투자 -----

제9조(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제12조(투자유치 지원) -----
----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

제13조(투자진흥기금) ①(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 국내·외기업 -----
2. 국내·외기업 -----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경제통상국장-----, ----- 투자유치관련과장-----.

제19조(지방세 감면) -----
----- 규정한 -----

-----.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 지식경제부장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식경제부 -----
-----.

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도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 연구소, 공장을 -----

-----.

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서비스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7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 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1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 국내기업투자 -----

1.~ 2. (생략)

제32조(지원한도) <신 설>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0조(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 국내·외기업투자 -----

1.~ 2. (생략)

제32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도내 낙후지역에 -----

[별표 2] 지원기준(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와 관련)

| 구분 | 대상 |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
|-------------------------------------|---|--|
| <p>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p> | <p>◆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p> | <p>○ 사업기간 - 사업기간 3년 이상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p> <p>○ 기업규모 〈본사 및 공장〉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본사 또는 공장)가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p> <p>〈연구소〉 -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p> <p>〈집단화 이전〉 -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다만,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중평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정업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p> <p>○ 지원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p> |

| 구 분 | 대 상 |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
|--------------------|---|--|
| 도내공장 증설기업 지원 | ◆ 도내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중일 것 ○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서비스업 지원 | ◆ 수도권 및 타 시도 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도내 소재 서비스 업이 증설·투자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3년 이상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 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 로 증명하는 경우) ○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이고 전부(본사 또 는 사업장) 또는 일부(본사 또는 사업장)가 이 전·증설하는 경우 이전·증설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 지원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 의2제1항에 규정한 업종 및 골프장 운영업은 제외 |

관 계 법 령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2008.12.31>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

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⑤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⑥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⑦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⑧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개정 2007.1.5>)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12.31, 2007.1.5>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 1의2.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7.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항제3호에 따른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